##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942

발의연월일: 2024. 11. 27.

발 의 자:김성원ㆍ이인선ㆍ김선교

박충권・박성훈・고동진

김정재 · 김소희 · 송석준

서일준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확대 등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점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을 통해 지방의회인사권 독립을 이루어 독립적인 인사운영 체계를 갖추었으나, 의정활동 보좌인력 부족,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편성권 미독립으로 지방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요한 지역사회 문제를 주체적·능동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아직 인프라가 매우 부족함.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정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할 지방의정 연구원의 설립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 법령체계에서는 지방의회 주 도로 지방연구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정연구원의 설립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연구원 설립의 주체에 지방의회를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등).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한다)"를 "한다) 또는 특별시의회· 광역시의회·특별 자치시의회·도의회 및 특별자치도의회(이하 "시·도 의회"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를 "한다) 또는 시의회(이하 "대도 시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을 "한다), 대도시 시장 또는 시·도 의회 의장, 대도시 의회 의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을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시·도 의회 의장, 대도시 의회 의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을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시·도 의회 의장, 대도시 의회 의장"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을 각각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시·도 의회 의장, 대도시 의회 의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을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시·도 의회 의장, 대도시 의회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을 "시·도지사, 대도 시 시장 또는 시·도 의회 의장, 대도시 의회 의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특별시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u>한</u>	<u>ট</u>
<u>다)</u> 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다) 또는 특별시의회·광역시의
	회・특별자치시의회・도의회
	및 특별자치도의회(이하"시ㆍ
	도 의회"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	②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u>한다)</u> 에도	<u>한다) 또는</u>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시의회(이하 "대도시 의회"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정관) ① (생 략)	제5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은 이	2
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 •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	
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u>한다) 또는 대도시</u>	<u>한다)</u> , 대도시 시장
<u>시장</u>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는 시·도 의회 의장, 대도시
	의회 의장

제8조(임원의 선임) ①·② (생략)

③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정관에 명시된 사람(이하 "당연 직이사"라 한다)과 원장이 학계 ·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u>시·도지사</u>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④ (생략)

제17조(사업계획 등 승인) 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결산서 등 제출) 지방연구 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u>시</u>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사업실적 보고서와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지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 같음) ③
대도시 시장 또는 시·도 의회
의장. 대도시 의회 의장
10, 11 1 1 1 0
<u>-</u>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업계획 등 승인)
٨] ٠
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시ㆍ
도 의회 의장, 대도시 의회 의장
<u> 그 기외 기 8</u> , 네 <u>고 기 기위 기 8</u>
 레10고/거시시 드 레츠)
제18조(결산서 등 제출)
<u>入</u>
·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시
•도 의회 의장, 대도시 의회 의
<u> 장</u>
,

- 1. (생략)
- 2.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u>시</u> <u>•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u>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생략)
- 제20조(지방연구원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연구원은 지방연구원 상호 한의 정보교류, 연구실적의 상호활용, 공동연구사업 등을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지방연구원 간 지방연구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u>지방자치단체</u> 및 지방연구원 은 협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다.
- 제22조(검사 및 감독) ① <u>시·도</u> 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 연구원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지방연구원에 관계 서류·장 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 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지방연구원의 사무

2 <u>メ</u> ]		
<u>• 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u>		
시·도 의회 의장, 대도시 의		
<u>회 의장</u>		
3. (현행과 같음)		
제20조(지방연구원협의회의 구성)		
①		
<u>시·도지사,</u>		
대도시 시장 또는 시·도 의회		
의장, 대도시 의회 의장		
②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제22조(검사 및 감독) ① <u>시·도</u>		
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시·도		
의회 의장, 대도시 의회 의장		

1. (현행과 같음)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